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02124-1077

시행일자 1992.7.10

(경유)

수신 (제1안) 내부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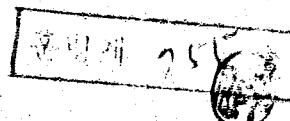
참조

취급		시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길	<i>전길</i>
법무 담당관	<i>법무 담당관</i>	
법제 계장	<i>법제 계장</i>	
기안	이종우	법조

제목 훈령발령

1.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별안과 같이 시로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발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공보관

제목 :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 해외담당관

참조 : 훈령발령

1. 국제01600-330(92.7.6)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로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작오 없도록 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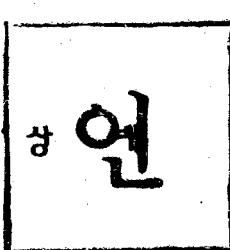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행정주체관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92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이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및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서울특별시 해외 주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와 자매 결연한 외국도시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도시에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주재관의 설치방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근무장소) 주재관은 주재하는 도시를 관할하는 청사에서 상근한다. 다만, 별도의 주재관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임무) ① 주재관은 주재하는 국가 및 도시의 행정기법과 정보 및 자료등을 수집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② 주재관은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업무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파견 교류단의 현지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재관 파견근무를 해제하였을 경우 주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선발요건) ① 주재관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

3.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된 자.
 5.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4급 공무원
 3.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 제6조(선발절차) ① 주재관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주재관의 해외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재관 설치 도시별로 회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망자는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주재관 회망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 6월 이상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상당기간 외국어 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주재관으로 근무할 자를 지정 또는 위탁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파견시기) 주재관의 해외 파견은 결원 보충을 제외하고는 매각년 9월에 실시한다.

제9조(동반가족)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제10조(명령복종) 주재관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품위유지) ① 주재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써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동반하는 가족의 품위유지에 대하여서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법의 준수등)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영리활동금지) ① 주재관은 주재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주재관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외국국적취득금지) 주재관은 그 동반 가족에 대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시귀국 및 주재국이외의 여행) ① 주재관이 일시 귀국하고자하거나 그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재공관의장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재관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재공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소환등) 주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소환한다.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이 정한 재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기타 직무수행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7조(보수) ① 주재관의 보수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 수당 규정 제4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임차료)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무부 지역별 재외 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9조(복무규정의 준용) 주재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